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노후생활을 위한
미국 실행 사례연구

- 주거, 희망복지, 노후희망 활동 등을 중심으로-

2016. 7

최 영 미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켄터키 대학교(University of Kentucky)
3. 훈련분야 : 복지행정
4. 훈련기간 : 2015. 7. 01 ~ 2016. 6. 30
5. 훈련과제 : 재가 독거어르신과 취약(치매)한 어르신을 위한
선진국의 정책 사례 및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연구

I. 서론 및 이론적 논의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흔히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의 기준은 유엔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이상에서 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 부른다.

서울시의 2015년 5월 기준 노인인구는 123만 명에 달해 시 전체인구의 12.1%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로 분류된다. 고령화사회인 서울에서는 매년 6만명 이상의 노인이 늘어나는 추세라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 서울 뿐 만 아니라 지구촌 각 나라에서는 점점 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라는 초유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3년, 영국 47년, 독일 40년이 걸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9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유례없이 빠른 고령사회가 되었다. 서울의 경우도 평균수명의 증가 외에도 출산율의 저조한 수준은 고령인구의 비율을 더욱 빠르게 높이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주는 의미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잠재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제활동 저조로 투자·저축의 위축으로 전반적인 고용수준이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저하와 고용감소는 국가재정수입이 감소됨을 의미하며 동시에 개인들의 조세부담이 증가로 이어진다. 조세의 증가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 다시 저축,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시장의 전반적 침체와 악순환이 되는 저성장이 고착됨을 의미하는 것이다.²⁾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6.25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끌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진국으로 진입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전통적인 문화와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 등 여러 이유로 현실적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국가 평균의 3배로 높게 나

1) 연합뉴스, 2015년 5월28일

2) 정홍원 외4인,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현황분석과 향후 발전방안“ ‘한국보사연’, 2014

타나 있고, 노인 자살률도 OECD국가 최고수준(10만명당 64.4명)이며 독거어르신들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기대수명의 증가로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방안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4년 8월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노후생활(e-서울통계 85호)』을 시민에게 공개하였다. 서울서베이(2003~2013년), 통계청 사회조사(2005~2013년), 인구주택총조사(2000~2010년) 장래가구추계(2013~2030년)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60세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노후에 희망하는 동거유형,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노후에 희망하는 활동 등의 변화를 통계로 작성(정보공개정책과-16405)하여 시민에게 공개한 것이다.

이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민은 60세 이상이 되면 (1) 노후에 희망하는 동거유형으로 ‘자녀와 가까운 곳에서 따로 살거나(21.2%), 노인 전용공간에서 사는 것을 선호(30.3%)하고 있었다. 이에 초고령사회로 이비 접어든 미국에서 현재 실행중인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ies)라는 노인전용주거공간 커뮤니티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노후생계에 대한 부양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60세 이상 중 11.3%만이 자녀가 내 노후생활을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가족(자녀) 및 정부사회의 공동 책임(54%)이다” 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서울시민의 부양가치관이 가족 → 정부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정부와 사회에 대한 기대요구가 높아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미국에서 50세 이후 노년층의 복지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 HCCBG(Home and Community Care Block Grant)라는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3) 노후에 희망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94.3%가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희망하는 복지서비스가 2013년 건강검진(32.5%)로 2005년 46.8%에 비해 감소하는 반면,

간병 및 가사서비스 등 실생활에 도움되는 복지서비스가 증가(간병 2005년 13.8%→22.8%, 가사서비스 2005년 6.1%→2013년 14.4%)한 것으로 나타나, 이곳 미국 노인복지사무소(AAA)와 AARP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미국 노인들이 받고 있는 실생활 복지서비스를 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4) 노후에 희망하는 활동 분야로서는 취미 또는 교양 활동 83.4%, 소득 창출 활동 73.8%로 나타냈으며, 적정한 은퇴시기로는 65~69세까지 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은퇴이후 약 9년은 소득창출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연구자가 1년을 지냈던 렉싱턴에서 만난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미국 '어르신들이 받는 안정적인 연금제도'를 소개하고,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수립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5) 연구자는 15년간 치매어머님을 모시며 직장생활을 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현재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은퇴후에는 독거노인으로 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독거어르신과 취약(치매)한 어르신을 위한 선진국의 정책 사례 및 복지서비스 연구』는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이자 동시에 미래(10년내)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오랜 고민이었음을 밝힌다.

II. 본론

1. 노후에 희망하는 주거 유형

기대수명의 증가(2000년 78.8세→2011년 82.7세)로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희망하는 노후생활 유형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15세 이상 서울시민들은 2013년 나이가 들어 혼자서 살기 어려울 때 가장 선호하는 동거유형으로 '자녀들과 가까운 곳에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따로 살고 싶다'가 42.4%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전용공간(실버타운, 양로원 등)이 36.0%로 응답했고, 자녀

와 함께 살고 싶다 12.5%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1-1> 서울시민이 노후 희망하는 동거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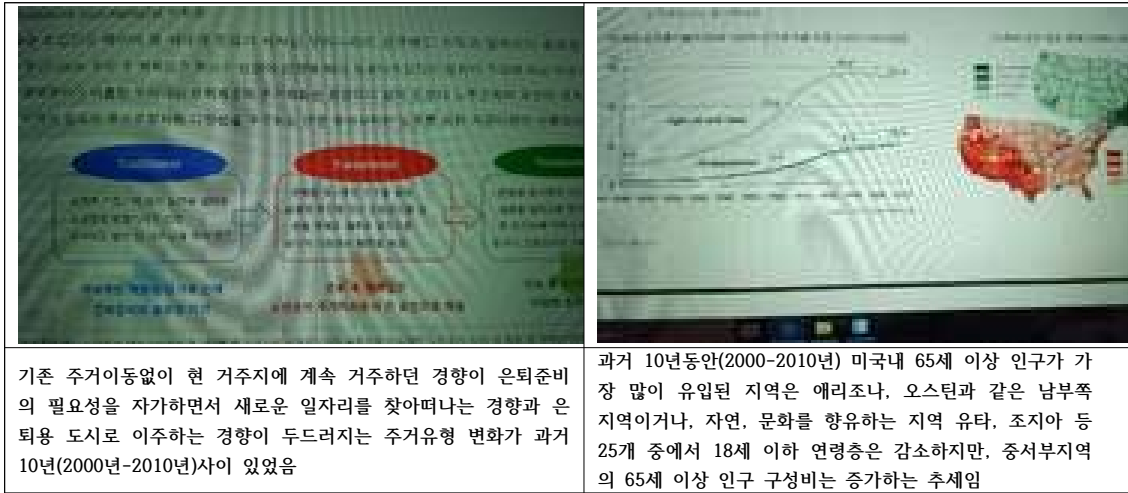
| <만 15세 이상이 노후 희망하는 동거유형> | | < 연령별로 본 노후 희망하는 동거유형 > (단위:%) | | | | | | | | | | | |
|-----------------------------|-----------|--------------------------------|--------|------------|-------------------|-----------|--------|------------|------|------|------|------|------|
| | | 연령 | 2003년 | | | | 2013년 | | | | | | |
| 자녀와 가까운 독립공간에서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 | 자녀와 함께 살고 | | 노인전용공간 | 기타(친구와 함께) | 자녀와 가까운 독립공간에서 따로 | 자녀와 함께 살고 | 노인전용공간 | 기타(친구와 함께) | | | | | |
| 52.3 | 49.9 | 48.1 | 45.4 | 46.4 | 27.1 | 32.6 | 34.1 | 34.4 | 35.7 | | | | |
| 14.4 | 10.9 | 10.8 | 13.1 | 10.2 | 15~19세 | 9.1 | 28.0 | 43.8 | 19.1 | 5.0 | 39.1 | 33.4 | 22.5 |
| 6.2 | 기타 | 6.5 | 7.0 | 7.7 | 20~29세 | 7.9 | 30.7 | 50.1 | 11.4 | 5.4 | 43.1 | 35.0 | 16.6 |
| 2003년 | 2005년 | 2007년 | 2009년 | 2011년 | 30~39세 | 8.0 | 33.6 | 53.4 | 5.0 | 8.6 | 38.9 | 43.4 | 9.1 |
| | | | | | 40~49세 | 11.6 | 29.9 | 54.3 | 4.1 | 12.4 | 36.3 | 44.2 | 7.1 |
| | | | | | 50~59세 | 19.3 | 21.7 | 55.4 | 3.6 | 15.1 | 32.1 | 46.5 | 6.2 |
| | | | | | 60세이상 | 33.4 | 13.7 | 50.5 | 2.4 | 21.2 | 30.3 | 44.2 | 4.3 |

* 자료 : 서울시「서울서베이 각년도」
 - 질문 : 나이가 들어 혼자서 살기 어려울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인전용공간 : 실버타운, 양로원 등
 - 표내의 구성비(비율)는 반올림된 수치로 합이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지난 10년간(2003~2013년)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3년부터 2013년 최근까지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견해는 10~15%에 불과하였으며, 가장 선호하는 동거형태인 ‘자녀와 가까운 독립공간에서 따로 살고 싶다’는 견해는 2003년 52.3%에서 2013년 42.4%로 줄어든 반면, 노인전용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7.1%에서 36.0%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나이가 들어 혼자 살기 어려울 때, 서울시민은 자녀와 가까운 독립된 공간에 따로 살거나, 노인전용공간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미국인구 변화에 따른 은퇴계층의 주거특성(2000~2011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증가율과 미국인구밀도변화 보고서 :미래에셋부동산연구소)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지역은 따뜻한 지역, 지역적으로는 중소도시로 나타나고 있다.(오른쪽 사진 검은 화살표 표시) 즉, 네바다, 아리조나, 유타, 조지아같은 25개주에서는 따뜻한 기후와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동부(초록색)의 65세 이상 인구가 중서부(빨간색)으로 이동하여 추운지역→따뜻한지역, 주택가격이 비싼 대도시→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림 1-2> 미국 은퇴계층의 주거특성



출처 : 미국인구변화에따른은퇴계층의주거특성(2011년 미래에셋부동산연구소)

이들 부동산업계의 조사에 의하면 과거 10년간 미국인은 은퇴후에도 재취업을 원하는 성향이 강함에 따라 외곽 이주보다는 일자리 수요에 따른 이주를 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같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라는 형태의 노인주거단지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기존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들의 양로시설로서 종교단체 및 지역사회 비영리기관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노인주거시설로 의료서비스 시설을 모두 갖추어 24시간 케어서비스가 가능한 노인만의 커뮤니티(우리나라 양로원 시설 해당)였다면, UBRC는 대학교가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은퇴자 커뮤니티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인프라를 활용하여 노후생활을 케어하는 노인주거단지다.

□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태동 배경 및 개요
 UBRC는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일하던 앤드류 칼리라는 행정가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는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던 중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다시 강의실로, 지적인 자극을 받고 싶어하며 자신들의 자녀가 다니는 대학을 포함한 대학 청년들과 어울리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교와 주택 제공자 사이에 문

서화된 금융관계에 기반한 재정계약을 맺었다.

UBRC의 가장 큰 장점은 캠퍼스에 근접한 독립적인 주택에서 살면서 어르신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활동의 기회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원한다면, 그들은 지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으며, 캠퍼스 주민으로서 대학생활에 가깝게 지내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그들은 원하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 커뮤니티 직원으로 일할 수도 있다” 앤드류 칼리의 설명이다.

기존 양로원이 외따로 떨어진 외곽지역에서 별다른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 소득창출 활동없이 의,식,주와 의료서비스만 충족시켰다면 UBRC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라인 8domains모두 충족시킨 모델이므로 사례를 다섯가지로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다트머스 대학(뉴햄프셔주)

뉴햄프셔주 Hanover에 있으며 평생교육 다트머스(ILEA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적이면서도 인간지향적인 Assisted living home과 nursing care를 제공하고 있다. 1991년 문을 연 이래 대학에서는 일반 Social Director를 초빙하는 대신 켄들 거주자 협회(Kendal Residents' association)에서 사회복지사, 직원 도우미, 문화강좌 강사 등을 자원봉사자로 모셔서 운영하고 있다.

<그림 1-3> 하노버 다트머스 대학 전경과 커뮤니티 하우스



주민들은 Dartmouth-Hitchcock 의료센터에서 제공하는 거주주민을 위한 현장 클리닉의 혜택을 받는다.

대학 캠퍼스내 카페, 도서관, 수영장, 운동시설, 레크레이션 시설, 아트 스튜디오, 뮤직 방 등을 대학생들과 나란히 같은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으며, 낚시, 책 토론, 뜨개질 모임, 스키 여행 등을 즐기며 살고 있다.

<그림 1-4> 캠퍼스내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삶과 자원봉사 모습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하노버 켄들로 오는 것이다” 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출처 : <http://kah/kendal.org>

○ Marylhurst 대학(오레곤주)

오레곤주의 윌라멧 강 인근에 있는 Marylhurst 대학은 1893년 예수와 마리아 수녀회에 의해 설립되었다, 오리건주 가장 오래된 카톨릭 대학교이며 예술 분야로 유명하다.

<그림 1-4> 매리 허스트 은퇴자용 주거시설과 공동 식당



목가적인 숲 주변에 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며,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라 불리는 은퇴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은 Resort-style 주택에서 최첨단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1-bedroom 또는 2-bedroom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식당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어르신들은 몇 걸음만 나가면 훌륭한 산책로를 찾을 수 있다. 주민들은 사교행사, 건강관리 프로그램, 음악 콘서트, 대학강의를 접할 수 있으며, 행사에 따른 교통비가 무료다.

<그림 1-5> 매리 허스트 은퇴자 커뮤니티 생활



대학내 수영장과 스파, 그리고 건강시설을 즐길 수 있다

대학내 바이킹을 즐기고 있는 은퇴자들

대학내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스파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중 노인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곳이다.

나이가 들어 인문학과 예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무료 컴퓨터 수업, 와이파이, 아이패드를 무료로 제공받는다. 수업신청시 많은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출처 : <http://maryswoods.org>

○ 홀리 크로스 노트르담 대학(Holy Cross Village at Notre Dame) 인디애나주에 있으며 은퇴공동체로서 2016년 최우수 노인 전문 요양시설로 World report 뉴스에 소개된 바 있다. 1842년 Edward Sorin과 6명의 홀리 크로스 브라더스 단원들이 자신들이 가진 땅에 대학교를 설립하고 은퇴자들을 위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날의 시니어 공동체를 만들었다. 홀리 크로스 단원들은 지금도 공동체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형제단원중 은퇴자도 홀리 크로스 공동체에서 은퇴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홀리 크로스 공동체로 이사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공동체에서 Home purchase Program team이 나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것(집을 멋지게 꾸며서 빨리 팔 수 있도록 함)을 도와주고 만일 6개월

이내에 팔리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집을 사기도 한다.

<그림 1-6> 홀리크로스 노틀담 대학 은퇴자 공동체 주거

| | |
|---|--|
|  |  |
| <p>홀리 크로스 은퇴자 공동체 전경, 대학교 안에 있지만 독립적인 공간이다</p> | <p>은퇴자용 주택, Schubert Villa Assisted Living 이라고 불린다</p> |

Schubert Villa Assisted Living 라고 불리는 주택에서 살면서 3끼 주방장이 준비한 식사를 먹을 수 있고,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며, 방청소 서비스, 세탁 서비스, Wellness 서비스, 주거 유지보수, 재활과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홀리 크로스 마을 노틀담 대학 수업을 받고, 대학내 시설을 이용하며, 안전을 보장하는 주거생활을 영위하며, 비할 데 없는 평생학습을 제공받는다. 독립적이고 신체적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양식이 세심하게 동선화되어 있다.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공동 이벤트는 주방장 요리경연 대회 참가하여 요리 맛보기, 꿀벌 수확하기, 할로윈 파티, 알치하이머 예방 서비스, 골프 치기 등이다.

<그림 1-7> 홀리크로스 대학 시니어 공동체 어르신들의 삶

| | |
|---|--|
|  |  |
| <p>가벼운 식사, 정찬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식당이 있어서 3식을 전부 주방장의 요리로 해결할 수 있다.</p> | <p>골프를 즐기고 있는 홀리 크로스 공동체 노인들</p> |

지속적인 학습기회와 다양한 경험, 높은 수준의 학문에 노출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부심이 높으며, 자원봉사자로서 국제 학생 프로그램을 도와주고 있다.

출처 : Holycrossvillage.com

○ Lasell 대학(매사추세츠 주)

매사추세츠 주 근교에 있는 영국 뉴 잉글랜드 마을풍경의 공동체이다. 15개 주거용 건물에 225가구가 Lasell 대학이 후원하는 가운데 2000년 5월부터 전문요양시설을 갖추고 “학습, 그리고 웃음 생활을 위한 열정”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가지고 Village Community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1-8 > Lasell 대학 시니어 주거시설 및 공동식당



Lasell 마을 전체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지구이다. Lasell House라 불리는 아파트형 주택은 메디 케어에서 인증된 시설이다. 전문직 의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며 정형외과 재활, 심장 재활, 뇌졸중 회복, 통증 관리 등 각종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들은 연간 450시간을 주민들과 운동 학습활동을 해야 한다. 운동의 성격당 1대1, 또는 그룹으로 대학생이 은퇴 커뮤니티 노인을 위한 운동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들은 퇴직한 주민들만을 위한 학술 학장(President of Academy)를 선출할 정도로 어르신들은 학구열이 높다. 어르신들 중 교수를 하다 은퇴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강사료를 받으며 유급봉사를 할 수 있으며, 강의실, 스튜디오, 도서관, 피트니스 시설등 대학내에 있는 시설을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림 1-9> Lasell 대학 대학 시니어 공동체 어르신들의 삶

| | |
|---|--|
|  |  |
| <p>피트니스 센터 내 수영장 수영강습</p> | <p>시니어가 참여하는 교육강좌 모습</p> |

출처 : lasellvillage.com

○ 오크 해먹 게인즈빌 플로리다 대학(Oak Hammock Gainesville Florida) 플로리다는 연중 온난한 여름기후로 은퇴한 미국 노인들이 여행을 왔다가 집을 싸가지고 이사를 오는 곳이다. 이 공동체는 퇴직한 교직원과 대학 동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1997년부터 이 대학의 교수였던 Ray Coward와 대학설립 핵심멤버들이 모여서 대학에서 후원하는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만들어졌고, AARP() Magazine에서는 이곳을 “당신의 삶을 재발견할 수 있는 15 장소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그림 1-9> 오크 해먹 게인즈빌 플로리다 대학 시니어 공동체 생활모습

| | |
|---|--|
|  |  |
| <p>오크 해먹 게인즈빌 시니어 공동체 취미 활동 어르신들</p> | <p>교육 수강 모습</p> |

이곳에서는 예술, 엔터테인먼트, 야외 활동, 플로리다의 좋은 기후에서 즐길 수 있는 건강시설, 최고의 의료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은퇴한 플로

리다 대학 교수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은퇴한 교수들도 교육을 받는데 포럼을 열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다. 스포츠, 예술, 영화만들기, 골프 등 30개 이상의 취미를 같이하는 그룹이 있으며, 공동 식당이 여러개 있어서 식당을 선택하여 식사를 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식사를 배달받아서 먹기도 하고, 생일같은 특별한 날에 private dining room에서 축하 음식을 신청하여 먹을 수도 있다.

출처 : oakhammock.org

그 밖에 UBRC로는 캘리포니아 대학 공동체(US 데이비스) 등 미국내 대략 16개 대학 공동체 커뮤니티가 있다.

□ Villages Movement 소개 및 개요

보스톤 (Boston)에서는 2001년부터 Beacon Hill 지역주민들에 의해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은 최소한 36개주의 89개 마을이 있고 125개 마을이 진행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마을들은 Village-to-Village(VTV)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자금조달이나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관리 등에 훌륭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조언하고 있다.

마을당 150-2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산층이 대부분이며 각각의 멤버는 년회비를 납부한다. 년회비는 평균 \$450 정도 되며, 저소득자를 위해 할인을 해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Villages(마을)는 수요자 중심의 풀뿌리, 멤버십에 기반한 조직으로 각 마을이 자율권을 가지고 마을에 제공할 서비스를 결정한다. 멤버간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1. 집 안전수리
2. 교통 지원
3. 식사 배달
4. 개 산책시키기
5. 기술 교육
6. 건강 프로그램
7. 사회활동
8. 방문간호 서비스

Villages Movement는 WHO에서 안내하는 Aging in place 개념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나이를 먹어가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현실로 옮긴 것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enter for Disease and Prevention)는 Aging in place를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나이, 수입, 능력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편안하게 살수 있는 능력”(The ability to live in one’s own home and community safely, independently, and comfortably, regardless of age, income, or ability level)이라고 정의하였고, 미국 연방정부도 2012년 기존의 노인국(Administration on Aging)과 장애인국(Office on Disability)를 통합하여 지역생활실(Administration on Community Living)를 신설할 정도로 지역사회 중심의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복지업무가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가복지’라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성공적인 Aging in place(재가복지) 위해서는

1. 주거(housing)
2. 건강돌봄(health care)
3. 비의학적 장기 서비스 및 지원(LTSS : non-medical long term services and supports)
4. 기술(technology)

이 네가지의 효과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미국의 노인들은 집을 사면 최소한 10년~15년에 걸쳐서 은행 크레딧으로 빌린 융자금을 갚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집을 소유한 상태로 노후를 맞는다. 메디케어 수혜자의 85 퍼센트가 전통적인 단독주택에서 사는데, Village Community에서 제공하는 아래 서비스는 노화에 따른 치매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혼자 살다가 등한 시 하기 쉬운 건강 악화를 예방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1. 비의학적인 장기 서비스와 지원(Non-medical Long Term Services and Supports, LTSS)
2. 식료품 구입
3. 집 개조

4. 준비된 식사
5. 더 큰 지역사회와의 연계
6. 기술진보로 인한 사회적 관계 제공
7. 의료진 및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밀접함
8. 건강 진단 및 모니터링
9. 여가 및 교육 활동,
10. 가정에서 의학적 치료

출처 : www.nextavenue.org/village-movement-redefining-aging-place

○ 우리시의 적용가능성

위 성공사례로 든 UBRC와 Village movement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은 미국에서 기존 양로/요양시설 같은 시설중심의 노인복지가 아닌 “친숙한 곳에서의 노화(Aging in place)”라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갔다는 추이를 소개하였다.

UBRC의 경우 대학교수들에 의해 상당한 논의를 거친후 오랜 기간을 두고 설립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수준높은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교육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커뮤니티 멤버 스스로에 의해 조정되어 가고, 커뮤니티 멤버가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정되어 간다.

WHO가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고령친화도시(Age Friedly City)가 되기 위한 8 domains(1. 주거편의환경 2. 교통편의환경 3. 안전 및 고령친화 시설 4. 지역사회활동참여 5. 사회적 존중 및 포용 6. 고령자원 활용 및 일자리지원 7.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8. 보건 및 지역복지)이 있다. UBRC와 Village movement를 상세히 소개한 이유는 이 제도에서 8domains가 전부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UBRC가 8대 분야를 다 갖춘 ‘지식을 추구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최적의 모델’이라면, Village movement는 ‘어르신들의 필요에 의해 자생된 공동체’이다. 실제로 이곳 켄터키 렉싱턴은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은퇴자의 도시로 자녀가 켄터키 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로, 종합병원시설이 가깝고 4계절 기후가 좋다는 이유로, 이곳을 방문했다가 아예 이사오는 어르신을 여럿 보았다. 렉싱턴에는 시니어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종합병원과 가깝

인복지 및 자신들이 요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노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에서는 미국에서 노인의 욕구와 관심사를 대변 또는 해결해 주는 공식적 노인기관인

1) 노인복지사무소(AAA : Area Agency on Aging)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2) 은퇴자협회(AARP :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라는 노인복지 요구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전국민적인 기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3) 미국 노인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연금제도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SSA (연방사회보장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라는 연금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을 설명하고자 한다. 더 이상 어르신들의 생계를 가족의 책임이라는데서 벗어나 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의견에 대해 미국의 현황을 안내하고자 한다.

4) 또한 지역사회 돌봄 포괄교부금이라는 단일화된 노인 복지 지원금 (HCCBG : Home and Community Care Block Grant)이라는 시스템을 소개한후 우리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AAA(Area Agency on Aging)

노인복지사무소 또는 노인기관이라고 불리는 AAA는 지역정부 수준에서 노인의 욕구와 관심사를 대변 또는 해결해 주는 공식적 기구이며, 주정부가 지휘, 감독한다. 주단위 노인복지서비스 업무 중 해당 지역에서 행할 업무를 담당하므로 지역 노인들의 서비스에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AAA는 별도의 구역을 가진 기구로서 존재하며 수요에 따라 하나의 카운티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카운티에 하나가 존재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long term care service)를 비롯, 모든 프로그램의 계획,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노인을 도와주는 지역수준의 사회적 서비스 등 시스템의 개발 등을 책임진다. 따라서 책임 면에서 주단위 노

인부서와 거의 동일하며 관할권만 제한된다는 점이 다르다.

현재 미국에는 629개의 AAA가 있으며, 이들 기관들은 지역 간 상호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전국 지역노인기관협의회(NAA : National Association of Area Agencies on Aging)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방기관인 노인복지사무소는 서비스 재원마련, 예기치 못한 수요 확인 그리고 시스템개발활동을 하도록 법(노인복지법OAA³⁾)에서 보장받고 있다. 시스템개발활동은 AAAs가 비전을 수립하고 계획을 만들며, 관리, 조정, 통합, 평가, 지역사회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위해 하는 일련의 활동과 절차들이다.

AAAs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및 협조사항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

- 주정부와 지방정부 역할과 책임의 정의
- 지역계획의 가이드라인 제공 및 시스템개발의 지원과 장려
- 주(State)간 발생하는 장벽의 제거
- 공통 프로그램 기준 개발
- 접수, 조사, 평가도구의 개발 및 집행
- 정보, 자원,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원
- 지역사회 노력을 적극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적 지원 제공
- 좋은 사례(promising practises)의 공유
- 자료수집과 정보화로 노인관련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

○ 우리시의 시사점

노인복지사무소는 노인의 욕구와 관심사를 대변 또는 해결해 주는 공식적 기구이며 해당 지역에서 행할 업무를 담당하므로 지역 노인들의 서비스에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가령 자신이 살고 있는 노인복지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체노령화에 따라 발생한 불편함을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 신체적으로 약해지는 과정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재활 서비스 등 정

3) The Older American Act를 나타내는 말로 연방정부에서 제정한 미국의 노인복지법이라 할 수 있다. 1965년 제정된 이 법은 노인들의 복지와 건강 관련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4) 켄터키주 노인복지계획안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설사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노인복지사무소에서는 노령화에 따른 에일런의 서비스를 조정 및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2)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는 1958년 비영리 단체, 비정당적 단체로 은퇴한 어르신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노인의 자립 및 존엄성 증진,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지금은 노인복지 사업중 상당부분을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다.

AARP의 현재 모토는 “To serve, not to be served(봉사하기 위하여, 봉사받기 위하여가 아님)”로서, 고령자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조직 구성은 중앙본부(워싱턴), 각주사무소, 2500여 지역지회에 AARP가 있으며,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50세 이상 인구중 지원자를 회원(약 4천만명)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50세 이상이면 회원자격을 가질 수 있다. 회원 평균연령 65세로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성원은 직원과 자원봉사자이다.

산하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AARP 재단과 AARP Service Inc 이 있는데 AARP 재단은 저소득 55세 이상 노인 직업훈련, 세무 상담, 법률상담, 재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AARP Service Inc은 건강 보험, 장기건강관리, 자동차, 주택, 생명보험, 의약품 및 안과 관련 상품 할인, 숙박, 교통 등 여행상품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AARP 앱을 깔면 노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AARP의 주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누리는 혜택은 아래와 같다.

- Create the goods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자원봉사의 기회를 발굴하고, 지원자들을 연결하여 주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7천 종류 이상의 자원봉사 기회를 20만명이상의 봉사자들에게 연결하였음

- Tax-Aide
온라인 등을 통해 고령자들의 복잡한 세금 환급을 무료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보통 2명의 봉사자들이 서로 확인절차를 거쳐 환급작업을 진행
- Webinars(Web-Based Seminar)⁵⁾
인터넷을 통해 60분간 생방송으로 고령자들의 관심사항인 창업.건강.보험.사회보장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 누구나 이메일 등록만으로 실시간으로 참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음.
- Driver Safety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들이 고령운전자들에게 적합한 운전기술 및 새로운 자동차 기능, 변경된 교통법규 등을 지도하는 운전지도교육 프로그램
- AARP Chapter
1300개가 넘는 각 지부별로 음식과 의복의 수집.기부, 재가 독거고령자 방문,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지도.감독, 식사배달서비스 및 안식처 제공 등 추진
- Best Employer for Workers over 50 award
“고령자를 배려한 기업이 고령친화 제품을 생산한다.” 인식하에,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어떻게 배려하는지를 평가하여 최고의 고용주를 선정함으로써, 고령자들에게는 고령자들에게 좋은 고령친화 제품을 추천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고령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도록 함
- The AARP Network of Age-Friendly Communities
WHO와 협력하여, 고령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시설과 주택과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쉽게 의료, 복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고령 친화적인 커뮤니티를 지정하고 홍보하고 있음

5) 웹을 기반으로 하는 프리젠테이션, 강의나 워크샵 또는 세미나

-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자체 공공정책연구소 및 연구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노인문제관련 정책 연구를 하고 있으며 건강, 재정, 퇴직 후 설계, 주택 등 다양한 주제의 간행물 발간을 통해 노인들에게 정보 및 교육제공

재정조달은 회원회비(1인당 연회비 \$16), 정기간행물 광고수입, 관련사업자 로열티, 프로그램 이용료 등으로 조달되며, 회원들이 낸 협회비와 후원금, 영리자회사의 수익사업 등을 통해 연간 1조 5,000억원의 수입으로 운영되며, 수익은 다시 자선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된다

○ 우리시의 시사점

은퇴한 어르신들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져 지금은 범국민적인 기구가 되어 어르신들의 욕구를 대변하는 기관이 되었다. “Create the goods”이라는 단어 그대로 좋은 것을 창조하는 비영리적, 비정당적 기구가 어르신들에 의해 운영되고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3) 노인의 소득보장제도(연금제도)

노인대상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인 공적연금제도인 OASDI(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와 보충적 소득보장인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OASDI는 미국국내 거주자이면서 일정이상의 소득을 가질 경우 가입대상이 된다. 미국인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연방 노령, 유족, 장애보험(OASDI)제도, 철도직원 퇴직제도, 구 연방공무원 퇴직제도, 주 및 지방 공무원 퇴직제도, 퇴역군인제도 등으로 직종별로 분리 운영되며, OASDI는 단층제도로써 확정급여 방식으로 약 95%정도가 가입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근거는 최초법은 1935년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였고 현행법은 1983 제10차 사회보장법 개정안 법이다. 제도방식은 기본적으로 당해연도에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당해연도의 사회보장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부과방식이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수령액

에 소득세를 부과하여 기금으로 활용하는 점에서 완전한 부과방식은 아닙니다. 연금제도의 정식 명칭은 연방 노령, 유족, 장애보험 (Old Age, Survivors, Disability Insurance : OASDI) 제도이다.

주요 연혁은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제정(1936년 시행) (적용대상 : 65세 미만 상공업 근로자,철도관련산업 근로자 제외)였으며, 그 당시 급여종류는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사회보장세 등이었으며, 징수는 1937년부터 개시하였으나, 월정 급여는 1940년에 지급하기 시작했다.

1939년에는 제1차 사회보장법 개정하여 유족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족연금(65세 이상 처, 16세 미만 자녀) 등을 신설하였으며, 반환일시금 폐지하였다.

1950년에는 제2차 사회보장법 개정하여 당연적용 대상 확대하였다. 그 결과 상시 농장근로자, 상시 가사노동자, 비전문직 자영자 등이 연금대상이 되었다.

1954년에는 제3차 사회보장법 개정하여 당연적용 대상 확대하였다. 기존 대상이 아니던 자영농민, 가내수공업자, 전문직 자영자(의사, 치과 의사, 의료종사자, 변호사 제외)가 당연 적용 대상자가 되었다.

1956년에는 제4차 사회보장법 개정하여 당연적용 대상 확대하여 의사를 제외한 모든 전문직 자영자 계층, 실질적으로 농장경영에 참여하는 농장주를 포함시켰고 장애연금, 조기 노령연금 신설하였다.

1958년에는 제5차 사회보장법 개정하여 장애연금 수급자의 가족연금 신설하였다.

1960년에는 제6차 사회보장법 개정하여 당연적용 대상 확대하여 미국주재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관에 고용된 미국인(자영자로서 가입), 자녀를 위해 일하는 부모(가사나 일시적 근로는 제외)를 포함시켰다.

1965년에는 제7차 사회보장법 개정하여 당연적용 대상 확대하였는데, 자영의사, 인턴, 상시 팁 소득자를 포함하고 고령자 등 의료보호제도 (Medicare Hospital Insurance Program) 신설하였다.

1967년에는 제8차 사회보장법 개정하여 당연적용 대상 확대하였는데 성직자, 종교단체 종사자도 포함시켰다.

1972년에는 제9차 사회보장법 개정하였는데 당연적용 대상 확대하여 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자영업자를 포함시키고 물가연동제 도입하여 소비자 물가지수 3% 이상 상승시 연금액 연동하여 증액되도록 하였다.

1983년에는 제10차 사회보장법 개정하여 비영리기관 피용자(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 1983년 12월 31일 이후 임용된 연방정부 공무원을 포함시켰고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에 소득세 부과하여 그 재원은 OASDI 신탁기금으로 활용하였다.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 인상하여 65세에서 67세로 조정(2003년부터 2027년까지)하였다. 임의 가입한 주·지방 정부 공무원의 OASDI 탈퇴를 금지하도록 하였고, 물가연동제 개정하여 소비자물가지수와 임금인상지수 중 낮은 지수에 맞추어 기본연금액을 조정하였다.

연금제도 대상이 되는 자격은 당연적용대상자와 임의적용 대상자로 분류된다.

당연적용 대상자는 국내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상의 피용자 및 자영자(법 제210조 및 제 211조)로서 사업장 규모, 국적,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행정·사법부의 연방정부 공무원이 의무대상자이며, 공무원들에게는 일종의 기업연금인 新 연방공무원 연금제도(FERS ; Federal Employee Retirement System)에도 가입하도록 기회를 주었다.

임의적용 대상자는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대상자로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 간 합의에 의하여 의무가입(개인의사 무시)하도록 하였다. 일단 가입후에 탈퇴는 법으로 금지하였다. 1986년 3월 31일 이후 임용된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은 Medicare 제도에 당연가입되고, Part A에 해당하는 병원보험(HI)세 납부하도록 하였다.

연금제도 적용제외 대상자는 임시 농업 및 가사 종사자로 연간 순 수입이 일정액(400 USD) 미만인 자영자 및 피용자, 1984년 이전에 임용된 대부분의 연방정부 공무원으로서 舊 연방공무원 연금 제도(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에 가입되어 있는 자, 철도 피용자 : 철도 퇴직연금제도(Railroad Retirement System에 가입되어 있음) 등이다.

연금제도 가입절차는 사용자(회사)가 피용자(직원)의 성명과 사회보장번호 및 소득에 관한 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보고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penalties)을 받게 된다.

자영자의 경우는 매년 소득세 신고하고(4월15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사용자가 피용자의 임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피용자가 자신이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임금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점수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제도 대상자를 관리하는 도구는 사회보장카드 및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이다.

카드의 종류는 3가지인데 INS, NVFE, VFWOWA가 있다. INS는 미국 시민과 이주·병무청(INS : Immigration and Nationalization Service)의 노동허가를 받고 미국에의 입국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만이 기록되어 있어 이 카드를 소지하면 제한없이 노동을 할 수 있다.

NVFE 카드는 ‘취업불가(NOT VALID FOR EMPLOYMENT)’란 의미를 지닌 카드로, INS에서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미국에의 입국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다른 국가의 국민에게 발급되며, 사회보장 급여나 사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연방법이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VFWOWA 카드는 ‘이주병무청 인가 후 취업가능(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이란 의미를 지닌 카드로,

INS의 노동허가를 받고 일시적으로 미국에의 입국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자에게 발급된다.

연금제도를 관리하는 또 하나의 도구인 사회보장번호는 총 9자리 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3자리 : 지역번호(area numbers)로 원래는 최초로 사회보장 카드를 신청한 주(state)를 나타냈으나, 지금은 카드를 신청한 장소(반드시 거주지일 필요 없음)의 우편번호(ZIP code)를 뜻하고, 다음 2자리는 집단번호(group numbers)로 특별한 의미는 없고 번호 발행을 적당한 크기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마지막 4자리는 일련번호(serial numbers)로, 위 집단 내의 번호의 순서를 나타낸다.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수관리가 중요한데 연금재원조달방식은 수정부과방식으로 당해 연도 사회보장 수입금으로 당해 연도 급여액을 대부분 충당하지만, 1983년 제10차 사회보장법 개정에서 고소득자의 경우 사회보장 연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하여 OASDI 신탁기금으로 활용하는 점에서 완전한 부과방식은 아니다. 예상급여액의 일정액(2개월 분)을 지불준비금으로 늘 보유하고 국고보조가 없을 뿐만 아니라 OASDI의 관리비용도 사회보장세로 충당한다.

기금이 예상급여액의 2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기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회에 제시한다.

사회보장세율(OASDI + HI)은 피용자는 총 소득의 7.65%(6.2% + 1.45%), 자영자는 순 수입의 15.3%(12.4% + 2.9%), 사용자는 임금지급 총액의 7.65%(6.2% + 1.45%)를 낸다.

연금제도에서 국가는 연금관리운영비를 일체 부담하지 않고 연금관리운영비는 연금재정에서 부담하며, 다만 다음의 세 가지 경우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1. 남자의 경우 1972년(여자의 경우 1970년) 이전에 72세에 달한 고령자들을 위한 특별노령급여비용과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인 소득부조(SSI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비용 전액 부담

2. 1940년 9월 16일부터 1956년 12월 31일까지의 제2차 세계대전 중
과 그 후 몇 년간 군인으로 종사했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정시
매달 일률 적으로 평균임금을 \$160을 가산해 줌으로써 급여 부담
3.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자영자의 보험료 2.0%를 연방정부가 부담

연금제도는 급여를 관리하여야 한다. 급여관리 대상으로는 월정 급여, 일시금 급여, 고령자 특별 급여 3가지가 있다. 월정 급여는 노령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가족급여, 고령자 특별급여이고, 일시금 급여는 사망 일시금(lump-sum death payment)이다. 고령자 특별급여(special monthly cash payment)는 1972년 이전에 72세에 도달하고 완전가입 자격에 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미국시민으로서 청구 전달부터 역산하여 연속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합법적 영구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및 그의 배우자에게 각각 월별로 정액이 지급된다.

연금액 산정방식은 사회보장법 제213조 및 제214조에 의거, 급여 수급 요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자가 획득한 사회보장점수(Social Security credits : 종전에는 가입분기, quarters of coverage)에 의해 완전가입 자격(fully insured status), 준 가입자격(currently insured status) 및 장애기간 확정을 위한 가입자격(insured status for establishing a period of disability)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점수는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은 분기 수(number of quarters)를 나타낸다.

사회보장점수(Social Security Credits)는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 직업에 종사하여 얻는 연간 소득 (피용자)이나 수입(자영자)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 획득할 수 있으며, 총 소득에 기초하여 연간 최대 4점까지 획득 가능하다.

사회보장점수 획득에 필요한 기준 임금이나 수입은 1978년 이전 연도에 대해서는 연도 구간별 정액방식을 사용하였으나, 1977년 이후 연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청장이 매년도 1점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초로 전국평균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이 금액은 전년도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연방기록부 (Federal Register)에 공표된다

연금제도의 완전가입자격(fully insured status)은 40점(분기) 이상의 가입점수 획득하는 것을 뜻한다. 연령대별로 취득할 수 있는 점수에 차등을 두었다.

<그림 1-11> 연령대별 취득 크레딧 점수

| 연 령 | 점 수 |
|---------------|-----|
| 60세 이상 | 6 |
| 59세 이상 60세 미만 | 8 |
| 58세 이상 59세 미만 | 12 |
| 57세 이상 58세 미만 | 16 |
| 55세 이상 57세 미만 | 20 |

연금제도의 수급요건은 완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퇴직연장노령연금 3가지로 나뉜다.

완전 노령연금(Fully retirement benefits)은 완전 가입자격(Fully Insured Status)을 갖춘 자가 완전퇴직연령(FRA: Fully Retirement Age)에 도달하고 퇴직한 경우에 기본연금액(PIA)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림 1-12> 완전노령연금 개시연령

| 생년월일 | 정상수급개시연령 |
|---------------------------|----------|
| 1938. 1. 2. ~ 1939. 1. 1. | 65세 2개월 |
| 1939. 1. 2. ~ 1940. 1. 1. | 65세 4개월 |
| 1940. 1. 2. ~ 1941. 1. 1. | 65세 6개월 |
| 1941. 1. 2. ~ 1942. 1. 1. | 65세 8개월 |
| 1942. 1. 2. ~ 1943. 1. 1. | 65세 10개월 |
| 1955. 1. 2. ~ 1956. 1. 1. | 66세 2개월 |
| 1956. 1. 2. ~ 1957. 1. 1. | 66세 4개월 |
| 1957. 1. 2. ~ 1958. 1. 1. | 66세 6개월 |
| 1958. 1. 2. ~ 1959. 1. 1. | 66세 8개월 |
| 1959. 1. 2. ~ 1960. 1. 1. | 66세 10개월 |

조기 노령연금은 완전 가입자격을 갖춘 자가 62세에 도달하고 퇴직한 경우로서 청구연령에 따라 감액률이 적용된다.

퇴직연장 노령연금은 완전 가입자격을 갖춘 자가 퇴직급여 청구를 연기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하다가 퇴직한 경우로서 연기한 매월에 대해 증액되는 금액은 62세 도달연도에 따라 다르게 청구지연 가산금 적용된다.

청구지연 가산금(delayed retirement credit)이란 전 수급개시연령 이후로 청구 지연할 경우 1개월 당 완전퇴직연령 도달 연도구간(수급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연금액 차등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는 렉싱턴에서 만난 연금으로 사는 한 고령자를 인터뷰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연금시스템을 설명하고자 한다.

□ 연금생활자 Ron Spriggs 74세

Ron Spriggs는 74세의 강사, 역사 교육가, “터스키기 에어맨(Tuskegee Airmen)”비영리 단체의 Commader이다. “땅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좋은 것(즉 땅 아래 누워있고 싶지 않다는 뜻)”이라고 말하는 그는 젊은 시절 공군에서 8년을 근무하고 IBM에서 30년을 근무한후 54세부터 은퇴하여 지금은 온전한 연금생활자이다. 공군 근무(Veteran of Army)한 것으로서, IBM회사 근무한 것으로서, 근무시 매달 적립하던 SSA(연방사회보장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3군데에서 노후 생활에 따른 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다. 그는 인터뷰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다 아마 내 연금이 더 많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연금을 받아 방3칸, 욕실 2칸, 거실, 부엌, 정원 등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다.

<그림 1-13> 연금생활자, 역사 강사, 비영리 단체 대표



교회에서는 IBM의 경력을 살려 교회 행사를 위해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원봉사하고, 터스키기 에어맨이라는 취미활동 단체의 대표로서 비영리 단

체를 이끌고 있다. 터스키기 에어맨은 미국 공군조종사 대한 역사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는 공군조종사의 삶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지낸다. “바쁘지 않으면 죽게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고, 실제로도 바쁘다”라는 말을 한다.

딸 5명을 키웠는데 딸들이 사는게 바빠서 전화통화 이외에는 거의 보지를 못하고 사는데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며 “딸들은 나를 돌보지 못하고 있지만, 신이 나를 돌보고 있으므로 나는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20년간 다리 수술, 내부 장기 수술 등으로 장애인증을 소지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서약 서명’을 하고 다니며, 죽을 때를 대비하여 유언장을 매년 갱신하면서 살고 있다.

20년간 혼자 독거 생활을 하여왔음에도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면 15분 이내로 찾아와 자신의 현관문 열쇠가 어디 있는지 챙겨서 위험에 있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친구가 있다고 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을 하며 자택에 기차방(Trail Room)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두고 짬 날때마다 움직이는 모형기차 마을을 만들며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다.

○ 우리시의 시사점

우리나라 은퇴한 고령인구중 많은 이들이 소득부재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곳 미국에서는 오랜 세월을 거쳐 대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대상자를 확대시켜 왔다. 연금제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OASDI(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크레딧, Social Security등을 통해 연금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전적으로 연금제도를 전담하는 기구 SSA(연방사회보장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라는 독립행정기구를 통해 전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도록 크레딧이 젊은 나이일수록 더 높이 주는 것도 인상깊다. 그리고 연금대상자가 되는 나이를 54세부터 63세까지로 두어서 은퇴하는 시기나 은퇴할 직장 등을 놓고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도 좋은 정책인 듯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기구를 통해 연금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년에 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겠다는

연금액수를 보면 실생활비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속제가 전국민 대상 연금제도라고 본다.

4) 지역사회 돌봄 포괄교부금(HCCBG : Home and Community Care Block Grant)은 노인 복지를 단일화한 시스템이다. 미국노인들과 가족 돌봄 지정자, 노인 서비스 공급자들은 보조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수급자격, 서비스 정의, 서비스 활동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서비스 시스템을 불편해 한다. 지역사회 돌봄 포괄교부금(HCCBG)은 노인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인복지사무소(AAA, Area Agency on Aging)와 Local County(우리나라 구청 해당)로 하여금 보다 융통성을 발휘하여 서비스를 기획, 관리, 집행,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그림 1-14> 렉싱턴 로컬 파예트 카운티 전경



연방 노인법(Older American Act)에 그 근거를 가지고 1989년 설립된 주 인력자원국(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자문위원회는 노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자금을 공유하는 흐름(common funding stream)의 한 방법으로 포괄교부금 제도를 제안하여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수요를 충족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제를 구축한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총18가지로 아래와 같다.

1. 집단 무료급식(Congregate Nutrition)
2. 가정 식사배달(Home delivered Meals),
3. 데이케어(Adult Day Care)
4. 헬스케어(Adult Day Health Care),
5. 돌봄관리(Care Management)
6. 가정 간호(Skilled Home care)
7. 주거 개선(Housing and Home Improvement)
8. 정보 제공(Information and Case Assistance)
9. 재가 지원(In-Home Aide, 1-4등급)
10. 동료지원(Senior Companion)
11. 교통지원(Transportation),
12. 돌봄자 휴가(Group Respite)
13.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14. 건강 검진(Health Screening)
15. 일시보호(Institutional Respite Care)
16. 정신과 상담(Mental Health Counseling)
17. 시니어센터 운영(Senior Center Operations)
18.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Volunteer Program Development)

미국노인들은 양로원같은 시설보호 대신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요구 커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요양시설 입소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살고자 하는 비율이 90%에 이른다. 실제 1인당 소요비용을 비교해 보더라도 지역사회 돌봄(HCCBG)를 통해 소요되는 비용(1인당 900불)이 노인시설운영 비용(1인당 2,800불)에 비해 약 1/3 수준(2014년 기준)으로 지역사회중심의 노인복지 서비스 확충되었다.

지역사회 돌봄 교부금(HCCBG)와 노인복지사무소(AAA, Area Agency on Aging)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인복지사무소가 각 카운티의 자금계획과 함께 개별 서비스들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제공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공한다면 주 정부는 각 지역에 아래 기준으로 지역사회 돌봄 교부금(HCCBG)을 배분한다.

- 카운티 60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 50%
- 저소득 60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 30%
- 소수인종 60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 10%
- 시골지역 거주 60세이상 인구 기준으로 10%

각 지역 카운티(우리나라 구청 해당)는 프로그램별로 매칭 비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는데 예를 들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은 연방 85%, 주정부 5%, 지방정부 10% 매칭한다.

○ 우리시의 적용가능성

지역사회 돌봄 포괄교부금(HCCBG : Home and Community Care Block Grant)은 관공서 예산 집행의 타이트함을 유연하게 바꾸어놓은 시스템이다. 그 결과로 노인들은 각종 복지혜택을 노인복지사무소(AAA, Area Agency on Aging)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며 사실에 의거하여 받을 수 있다.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예산을 매칭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령,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활기반이 있고, 직장이 있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미국 시민이 되겠다고 영어로 구두 시험과 페이퍼 시험을 통과하고 시민선서를 해야 하는데, 선서 내용중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미국시민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권리 뿐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와 책임도 선서한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100달러를 벌었을 경우 36달러를 연방정부에 세금으로 낸다. 그리고 동시에 주정부세라고 해서 12달러를 살고 있는 주정부(켄터키주 등)에 낸다. 100달러를 벌어서 48달러를 세금으로 내고 52달러만 수령하며 살고 있는 시민의식으로 인해HCCBG를 운영할 수 있는 사회여건이 미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다.

우리시의 경우 지역사회 돌봄 포괄보조금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현실이나 노인인구와 수요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정수준의 예산범위내에서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신축적 변경,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및 폐지 등을 전제로 한 지역포괄보조금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미국은 아직은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인들이 대체적으로 인생을 경쟁이 아닌, 즐기는 곳으로 생각하는 이유중 하나는 '시스템적으로 기반이 갖추어져서 시스템을 따라가다 보면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을 여러번 하였다. 서울시민의 “노후생계에 대한 부양가치관이 변화”를 AAA, AARP, SSA, OASDI, HCCBG같은 시스템 기반시설을 만들어 ‘살만한 서울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3. 노후에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서울시민들은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는 비율은 줄고,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원한다는 생각은 증가하고 있으며,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유형도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 60세 이상 서울시민들이 가장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로는 건강검진이 3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간병서비스 22.8%, 취업알선 15.0%, 가사서비스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비교하면, 건강검진 복지서비스 선호율은 2005년 46.8%에서 2013년 32.5%로 감소한 반면, 간병서비스는 2005년 13.8%에서 2013년 22.8%로 증가하고, 가사서비스는 2005년 6.1%에서 2013년 14.4%로 증가하여 향후에도 정부 및 사회단체에게 요구하는 복지서비스가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건강검진 결과 발병을 했을 경우 1) 의료보장제도와 회복과정에서 필요한 2) 가족돌봄서비스 2가지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의료보장제도

의료보장도 소득보장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의료보험 형태인 Medicare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Medicaid⁶⁾이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이며 65세 이하라도 장애인의 경우는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의 운영과 관리는 연방보건사회복지부 산하인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의료보험센터)에서 하며 사회보험의 성격이므로 사회보장세에서 재원이 충당된다.

6) 미국은 각 주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조금씩 차별화 하면서 이름도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Medi-Cal 이라고 부르고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사회보장법 18조에 의한 노인간병보장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메디케어를 간략히 소개하면 Part A, Part B, Part C, Part D로 혜택이 나누어져 있는데

- Part A : 병원 입원비, 너싱 홈(Nursing Home)비용, 자택에서 건강관리에 사용하는 비용 지원
- Part B : 의사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용
- Part C : 치과, 한방침, 헬스클럽 멤버십
- Part D :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는 1965년 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가장 큰 공동 의료보장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연방과 주정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수급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요건이 주마다 다르다. CMS에서 운영지침을 제시하지만 주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주별로 수급자격과 혜택도 차이가 있다.

메디케이드의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일반재원으로 충당된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평균소득을 고려하여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주정부가 운영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수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진료비가 지급된다. 전통적인 진료비 지급방식은 행위별 수가체계 (fee-for-service delivery system)이지만 이는 의사의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도 있어 1990년대부터 많은 주들이 Managed Care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주정부는 Managed Care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행위별이 아닌 사람당 얼마씩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이 병에 걸려 간병이 필요한 경우 정부와 저소득층의 요구를 균형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Partnership Program이라는 정부에서 인증하는 보험상품을 정부기관, 사회보장전문가, 보험회사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개발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높은 간병비용으로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고, 65세인 사람이 사망전에 간병시설을 이용할 확률

은 약 50%에 이르기 때문이다.

연간 장기간병 비용이 2014년 전국 평균 72,240 달러이고, 장기간병이 필요한 병에 걸렸을 경우, 평균 간병시설 이용 기간이 2.5년(재택간병 제외)이며, 연간 간병시설 이용료가 2014년 기준 10만불(뉴욕주 평균)이므로, 파트너쉽 제도 도입 이전에도 민영간병보험이 판매되고 있었지만 가격이 비싸 주고객이 고소득층이었으며, 중산층이 구매 하기는 어려웠고 일반인이 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므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일부에서는 정부재정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메디케이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정부재정으로 간병비용을 조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림 1-15> 뉴욕주 민관 협력 파트너쉽 보험상품 혜택

| 상품 종류 | 토탈 자산50 | 토탈 자산100 | 보험료50 | 보험료100 |
|----------------|---|----------------|------------------|----------------|
| 메디케이드 보유가능자 산액 | 보유자산 전액 | 보유자산 전액 | 보험금 수령액 | 보험금 수령액 |
| 시설간병 급부 | 일당 229\$이상 | 일당 229\$이상 | 일당 229\$이상 | 일당 229\$이상 |
| 재택간병 급부 | 시설간병 급부액의 50% | 시설간병 급부액의 100% | 시설간병 급부액의 50% | 시설간병 급부액의 100% |
| 급부지급기간 | 시설 3년 재택 06년 | 시설 4년 재택 4년 | 시설 1.5년 재택 3년 | 시설 2년 재택 2년 |
| 최대자기부담기간 | 100일 | 100일 | 60일 | 60일 |
| 기본급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간병(연간 시설간병 14일분 해당분) · 간병관리(전문가에게 이틀동안 간병계획설계 서비스를 받음) · 예약비용(연간20일) · 호스피스 간병 | | | |
| 기타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복리 5% 급부 증가(가입시 80세 이상자는 선택항목) · 평준 보험료(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인상 가능) ·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갱신 보장 ·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시 파트너쉽 사무소에 심사를 청구하고 필요시에는 조정요청도 가능 | | | |

이에 정부기관, 사회보장전문가, 보험회사 전문가들의 논의과정에서 공사간 파트너쉽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게 되었다. 州정부는 간병시설, 노인인구, 메디케이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보험사는 상품설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州정

○ 우리의 시사점

나이가 들어 중병에 걸리면 병원비, 간병비 등으로 가족 가계가 휘청하고 요행히 수술 등으로 퇴원해도 간병기간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기관, 정부, 보험업계가 협력하여 파트너십 상품을 개발한다면, 정부, 국민등 적절한 혜택을 받을 것이며, 연구과정에서 도출되는 자료들은 계획수립시 또는 국민 설득시 명확화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개인보건비용을 만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다.

2) 가족간병인(돌봄)지원서비스(Family Caregiver Service)

노인복지법 제3조는 가족간병인(돌봄)지원서비스(Family Caregiver Service)를 지원한다. 가족 간병인 돌봄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은 치매 등 장기간 질병으로 고생하는 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이 더 지속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돌봄가족지원 프로그램(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 NFCSP)을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노약자를 돌보는 가족과 비공식적 돌봄을 제공하는 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이들에게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및 훈련, 휴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대부터 의료치료 중심 시스템에서 점차 재택간호와 시설보호를 강조하는 시스템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2010년부터 저렴하면서 국가에게 치매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와 개인선호를 충족시키고자 구축된 시스템으로 적시에 새로운 요구에 따른 향상된 연방 정부의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돌봄 지정 간병인의 역할이 상당히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간병인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정책 수립에서 가족 돌봄은 앞으로 개인의 선택과 독립, 재가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약기술의 발달에 따라 환자들은 병원과 시설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이동하고 있

는 경향을 보이며, 요양인력 부족 현상도 가족의 돌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가족 간병인 돌봄 프로그램의 개념 및 지원 대상

가족 간병인 프로그램의 “돌봄 가족”이라 함은 혈연에 의하지 않은 자도 포함한다. 돌봄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약이나 서비스 구매 혹은 법에 의거해 돌봄을 제공하는 성인 가족 혹은 개인을 돌봄 가족이라 하며, 비공식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 또는 치매 환자나 신경과 뇌에 장애를 가진 자를 돌보는 자를 “돌봄 가족”이라 한다.

돌봄 가족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은 NFCA(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이지만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연계된 기관은

- Family Caregiver Alliance(FCA, 돌봄가족협회)
- National Center on Care giving(NCC, 국립요양센터),
- National Alliance for Caregiving(NAC, 국립요양협회),
- Generations United(세대연합),
- Eldercare Locator등이 있다. 이 기관은 정부와 연계하여 돌봄 가족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가족, 이웃, 친척, 친구들중 돌봄 가족으로 지정된 사람은 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을 돌보며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한다. 이에 의거하여 NFCSP에서는 가능한 모든 돌봄 대상자 즉 노인 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성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18세 이상의 비공식적 돌봄 제공자를 돌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60세 이상의 노인을 돌보는 성인 가족 혹은 18세 이상의 비공식적 돌봄 가족
 - 알츠하이머 및 이와 관련된 장애를 가진 자를 돌보는 성인 가족 혹은 18세 이상의 비공식적 돌봄 가족
 - 18세 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와 55세 이상의 친척
 - 18-59세의 장애를 가진 성인을 돌보는 조부모와 55세 이상의 친척
- 돌봄가족지원 프로그램은 돌봄 가족에 대해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 돕기, 개인 상담, 지지 단체 조직, 돌봄 가족 훈련, 일시 보호, 보충적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림 1-17> 켄터키 렉싱턴 돌봄가족 지정자 사례



이웃에 살고 있는 장애인에게 새벽 6시부터 3시간 오후 3시부터 3시간 하루 6시간 시간을 내어 돌봐주고 학비와 용돈을 충당한다는 돌봄가족 지정자(앞에 다운증후군 장애인, 뒤가 돌봄가족 무표정의 다운증후군 장애인을 한결 같이 미소를 지으며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신체접촉을 하며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특성상, 같은 동성을 돌봄 가족으로 지정하는 경향이 있음(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있는 남성은 선천성 뇌신경 장애인, 뒤에 있는 사람은 돌봄 가족) 뇌신경 장애가 있어서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는 장애인을 마치 동생처럼 돌보고 있었음

주정부에서는 이들 영역에 대한 지원을 융통성을 갖고 운영하며 돌봄 가족에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직접 현금 급여도 하고 있다.

이곳 렉싱턴에서 살면서 YMCA 운동시설에서 운동을 하었는데, 늘 장애인을 데리고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둘이 있어 얘기를 붙여보았더니 돌봄가족 프로그램의 돌봄가족이라고 하였다.

가족은 아니지만 집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이고, 장애인을 돌보는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돌봐주는 장애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므로 하루 6시간 시간을 내어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총 하루 6시간을 내어 돌봐주고 있다고 하였다. 남편이 생활비를 갖다주기 때문에 켄터키대 대학원 수업료(1년 2만2천불로 1달 약1천8백불 해당)와 용돈은 돌봄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충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치매나 뇌신경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돌보다 보면 돌봄 가족의 심리적인 고통도 따르기 마련인데 NFCA에서는 사이트를 통해 돌봄 가족에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돌봄 가족의 자기 옹호 지침 제공
- 돌봄의 10가지 지침
 - 일시 보호의 이용
 - 도움 요청하기

- 돌봄 대상자 및 의사와의 의사소통법
 - 돌봄 대상자 독립시키기
 - 자신 보호하기
 - 돌봄 대상자 사후에 희망 갖기
 - 다른 돌봄 가족으로부터 지지 얻기
 - 보호자와 시민으로서의 권리 찾기
 - 재가 돌봄을 위한 지침
- 돌봄 기술 : 관찰 기록, 가족회의, 돌봄 일지 작성
 -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시설보호 필요할 때 시설 선택하기 : 비용 조달 방법, 서비스와 직원에 대한 신뢰 및 안전성 평가, 이용자의 의견 탐색, 선호 파악하기(때로는 가족보다 돌봄가족이 환자의 선호와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시설 선택시 이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 자신의 삶에 책임지기: 긍정적 태도 갖기, 연구하기,
 - 도움 구하기: 도움 얻는 방법
 - 의사 또는 요양보호사와 소통하기: 의사와 돌봄 가족을 위한 지침
 - 돌봄의 공유: 받을 도움과 줄 수 있는 도움 파악
 - 전화 정보 이용법: 준비 사항, 정보 획득 요령
 - 입원시키기: 법적 서류, 병력 정보, 의료팀과의 협력
 - 좌절 대처법 : 원인 파악하기, 감정 인정하기, 질병과 환자 분리하기, 통제력 유지하기
 - 스트레스 관리: 감염, 우울, 수면 부족, 높은 사망률 등에 대한 정보와 스트레스 측정, 대처 및 관리, 이용 자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이 외에도 NFCA에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건강정보(Health Care Information)도 제공한다. 만성 질환자와 노인성 질환자, 알츠하이머 환자 돌보기, 치매 단계에 따른 돌봄 가족의 대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와 기관에 대한 정보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 지역사회 자원 찾기: 전화 및 온라인으로 사회복지사, 종교단체 및 주간보호시설, 의료 단체 찾기
-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와 연락처, 이메일 주소 : 호스피스, 건강보

험, 환자 옹호 단체, 일시 보호소, 질병 관련 기관 등 그리고 돌봄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자 단체로 Caregiver Cummunity Action Network (CCAN)도 조직하여 운영한다.

- 자원봉사자는 돌봄 가족으로서 다른 돌봄 가족에게 지지를 제공하고 교육하며 옹호하는 일을 한다. 위급한 경우에 대비하여 의료신분증(medical ID's for family caregivers)도 보급한다. 돌봄자와 돌봄 대상자의 인적 사항, 돌봄 시 요구되는 주의사항을 기재한 카드와 “돌봄 가족”이라고 적혀진 옷과 목걸이, 팔찌를 보급한다.

○ 우리시의 적용가능성

미국에는 ‘Medical Needy’라는 말이 있다. 원만한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한번 병에 걸리면 가난뱅이로 전락하게 된다는 뜻이다.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칠 수는 있지만, 회복과정에서 들어가는 간병비용으로 경제적으로 파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더구나 노인들은 젊은이들에 비해 3배 이상의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는 노인이라도 속으로는 한두가지 질병을 가진 상태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질병관리센터)에 의하면 약 80%의 노인들이 하나 이상, 50% 이상은 두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가족간병인(돌봄)지원서비스(Family Caregiver Service)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면 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처럼 부모님중 한분이 치매에 걸리면 형제자매중 한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고 가족간의 불화로 번지는 경우가 미국에서는 없다. 인근에 사는 이웃중 한명을 지정하여 꼭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에 적절히 도움을 받고 이웃은 기꺼이 적절한 급여를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15년간 치매에 걸린 친정어머니를 돌보며 직장생활을 해야만 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를 공단 각 지부에서 간병인이 필요한 가정에 연결하여 주고 있다. 구청에서 사회복지사 등 여러명이 나와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로서 일하는 경우 하루에 오전4시간, 오후 4시간을 근무하여도 한달 수입이 40만원에서 70만원선으로 환자를 돌보는 힘든 일에 비해 단가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오전9시부터 정해진 근무시간에만 요양보호사를 쓸 수 있다는 것도 문제였고, 치매 부모를 모시는 전담 가족으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미국에서는 이 3가지 문제를 간병인 “가족돌봄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을 통해 전부 해결하고 있었다.

4. 노후에 희망하는 활동분야

서울시민중 만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취미(교양)활동과 소득창출활동은 희망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손자녀 양육 희망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60세이상인 취미(교양)활동을 노후에 희망한다는 응답은 83.4%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어서 소득창출도 73.8%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18> 서울시민의 노후생활 희망하는 활동분야

| 2013년 서울시민의 노후생활 희망하는 활동분야 (단위:%) | | | | 만60세이상 서울시민의 노후생활 희망활동 > | | | | | |
|-----------------------------------|-----------|------|-------|--------------------------|-------|------|------|-------|-------------------|
| 연령 | 만15세이상 전체 | | | 만60세이상 | | | 비희망 | 그저그렇다 | 희망 |
| | 계 | 비희망 | 그저그렇다 | 희망함 | 계 | 비희망 | | | |
| 소득창출 활동 | 100.0 | 15.7 | 25.4 | 58.8 | 100.0 | 26.2 | 0.0 | 73.8 | 소득창출 활동 26.2 |
| 취미/교양 활동 | 100.0 | 3.1 | 35.9 | 61.0 | 100.0 | 4.9 | 11.7 | 83.4 | 취미/교양 활동 4.9 11.7 |
| 종교활동 | 100.0 | 27.7 | 34.3 | 37.9 | 100.0 | 28.6 | 35.0 | 36.3 | 종교활동 28.6 35.0 |
| 자원봉사 | 100.0 | 18.3 | 39.5 | 42.2 | 100.0 | 28.0 | 38.0 | 33.9 | 자원봉사 28.0 38.0 |
| 자기계발 | 100.0 | 17.5 | 38.7 | 43.7 | 100.0 | 25.9 | 42.6 | 31.5 | 자기계발 25.9 42.6 |
| 손자녀 양육 | 100.0 | 35.8 | 37.0 | 27.2 | 100.0 | 34.7 | 37.1 | 28.2 | 손자녀 양육 34.7 37.1 |

* 자료 : 서울시「2013 서울서베이」
 - 질문 : 각 항목별(소득창출활동, 취미/교양 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 자기계발, 손자녀양육)로 노후에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함.
 비희망(아마 안할것이다+절대하지 않겠다), 희망(아마 할 것 같다+반드시 하겠다)로 정리함.
 - 표(막대)내의 구성비(비율)는 반올림된 수치로 합이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반면, 손자녀 양육활동은 비희망 34.7%, 그저 그렇다가 37.1%, 희망

28.2%로 답변해 6개 활동 중 유일하게 비희망이 희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처럼 황혼육아는 60세 이상이 가장 하고싶지 않은 노후활동으로 나타났다.

연구자가 지냈던 켄터키 렉싱턴은 미국 중동부에 위치한 인구 38만의 전원도시로 켄터키 대학과 대형병원 중심의 도시환경과 Blue Grass라 불리는 전원환경이 어우러져 4계절이 뚜렷한 기후와 쾌적한 날씨로 인해 평균 소득 4만불의 은퇴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인구 90%가 백인이고, 흑인은 5%, 아시안과 히스패닉은 5%정도이다. 매년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은퇴자들은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며 독립생활을 하다가 혼자 살수 없다고 판단되면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Assistant Living으로 옮긴다. 일반 주택가에 위치하여 격리감이나 전혀 느낄 수 없다.

<그림 1-19> 켄터키 렉싱턴시 도심 Tates creek Living Assistant house



이곳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보니 몇몇 어르신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의 양해를 구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낀 Real Story를 1) 2명의 노후 활동과 삶을 사례로 소개하고, 2) ‘시빅 벤처스 회사 차원의 양코르 펠로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사는 켄터키 렉싱턴 고령자

- 사례 1 Alberta 74세

<그림 1-20> 전업 가정주부, 스스로 생활비 조달자, 수영Instructor, Alberta



알버타는 렉싱턴 보몬트 YMCA 수영 교실에서 수영강사를 하고 있다. 74세의 나이에 건강하고 늘 바쁘게 산다. 가정주부였고 전남편과 이혼했기 때문에 이혼시 받은 재산으로 현재 집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포츠를 가르치는 임시직을 전전했기 때문에 따로 연금을 받는 것이 없다.

그래도 평생을 스포츠 가르치는 것을 즐기면서 일했기 때문에 지금도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서 산다고 한다. 최근 켄터키 대학교에서 5년간 수영을 가르치다가 YMCA에서 성인과 초등생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회 가르치고 있다. 1인당 30달러 강습비를 받고 초등생반, 성인반 등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74세의 나이에 수영강사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 많이 놀랐는데, 이곳에서는 당연하게 여긴다. 중학교때부터 각종 스포츠를 좋아하여 취미가 직업이 되었는데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두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산다고 한다.

9개월간 수영을 배우면서 느낀 게 한결같이 성실하게 웃으며 가르치기에 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물으니 첫째, 가르치기를 정말 즐겨하기 때문에 기쁘게 가르치고 있으며, 무료로 가르쳐야 한다면 가르치겠다고 하는 평생에 걸친 취미생활이 있었다. 둘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도 정원일을 취미삼아 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하였다. 셋째, 정신적으로 책 읽기와 토론하기를 즐겨하는데 Mentally Activity를 즐긴다는 것이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당신이 해서 즐거운 일을 직업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 사례 2 Helen & Kelly 부부 72세,71세

<그림 1-21> 66세 고령자 Lexington Church Elder, Helen



재혼한 남편 Kelly와 함께 포즈를 취해 주었다.

렉싱턴 교회 영어성경세미나 참석중 연구자와 한컷

헬렌(Helen)은 Lexington Church의 장로이다. 7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고 보기좋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자가 차 없이 지내야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녀는 차량 Ride를 요청시마다 제공하였고, 영어 성경 세미나를 소개해주었다.

65세때 64세였던 현재의 남편을 만나 재혼하였고 각각 연금을 받기 때문에 방4칸, 욕실3개, 거실, 부엌, 정원이 있는 집에서 부부만 살고 있다. 은퇴한 나이는 헬렌은 64세, 켈리는 54세 은퇴하였다. 교회를 60년간 다니며 독실한 신앙 생활을 하는게 건강의 비결이라는 그녀는 남들을 위해 봉사로 채우며 노후생활을 보낸다. 날마다 부부가 나란히 걷는 것을 즐기고, 자택의 정원일을 같이 하고, 교회 봉사활동으로 주중과 주말을 채우고 지낸다. 헬렌의 인생관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스스로에게 복을 쌓는 것이라고 하고 남에게 분노를 품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렉싱턴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감기를 한번도 앓지 않았다고 한다. 켈리는 아들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그보다 먼저 죽었고, 1명은 렉싱턴에서 살며 가끔 방문한다고 한다. 말수가 비교적 적었던 켈리는 재혼을 통해 헬렌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 듯 보였다.

헬렌의 딸이 플로리다에 살고 있어 딸을 방문하고 1년에 1회 크루즈 여행을 즐기며 내쉬빌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도 가끔 방문하여 게스트 룸에서 2주간 지낸다고 한다. 연구자를 볼 때마다 늘 반갑게 웃으며 Hug를 해주던 그녀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는 전형적인 미국 노인이었다.

연구자는 1년간 렉싱턴에서 살면서 65~85세 연령대에 이르는 젊은 시니어들을 수없이 만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이가 어떤지, 건강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등을 물었다. 대체적으로 친절하고 여유있는 그들은 기꺼이 대답해주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즐거워했다.

대부분 혼자 살면서 음식도 직접 만들어 먹고 마켓에도 다니며 나름대로 노후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관심분야가 어르신 복지라 정정해보이는 어르신들에게 말을 붙이고 어떻게 그리 건강하게 운동을 하러 다니시는지, 자녀는 어찌 되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그들이 노후생활을 즐기는 비결은 대체적으로 3가지 비결로 압축되었는데 첫째는 정신적으로 활동(Mentally Activity)을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 있었다.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활동(Physically Activity)가 있었다. 세 번째는 종교등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Social Community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같이 자녀와 분리된 독립된 공간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고 싶어했으며, 자신이 아닌 다른 이(남편 포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삶보다는 혼자서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싶어했다. 그리고 자신이 더 나이가 들어서 living Assistance 등 요양보호시설로 가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혼자 독립생활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죽음에 대비하여 유언장을 때때로 갱신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58년 개띠)의 은퇴시기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아 현재 미국의 노후생활이 10년~20년 이내 우리의 미래 사회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였다. 이 부분은 연구자의 극히 일부분이고 제한적인 시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든 어르신들의 육성이야기(Voice recording real story)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었으며, 서울시의 60세 이상 통계 조사에서 취미나 교양활동을 하고 싶으며, 황혼 육아는 희망하지 않고 취미로 인한 소득창출을 희망한다는 사고가 미국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피부로 느꼈

다. 이런 의미에서 회사차원에서 은퇴자를 위한 비영리기관을 만들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 시빅 벤처스 회사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처음에는 회사 차원에서 시작한 은퇴자 프로그램이었으나, 소득창출 및 봉사활동의 시스템이 좋아서 범국민적인 비영리기관으로 발전한 프로그램이다.

2) 시빅 벤처스 회사 차원의 앙코르 펠로우 프로그램

(San Fransico Civic Ventures Company Encore Fellowship Program)

시빅 벤처스는 싱크탱크(think tank)이자 프로그램 인큐베이터 회사로 은퇴한 회사직원들에게 그간 직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지식을 이용해서 자원봉사할 의향이 있는 퇴직자를 위해 비영리기관을 만들어 관심분야와 특기를 고려하여 적정 봉급을 받으면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펠로우 프로그램을 1998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처음 비영리기관 설립자는 미국 보건, 교육, 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존 가드너(John Gardner)는 베이비 부머들이 의미있는 제2막의 인생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와 노인에게 도움이 되고 미국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하다고 보아 ‘앙코르 펠로우십(Encore Fellowship)’이라는 이름으로 자원봉사 조직을 구성하였다.

<그림 1-22> 앙코르 펠로우십 활동자들의 모습 및 자원봉사 기회 소개 사이트(AARP)



마크 프리드먼(Marc Freedman)은 앙코르 펠로우십 활동자들을 위해 ‘목적상(Purpose Prize)’을 줄 수 있는 상장수여 재단을 구성하여 시니어

들의 활동을 격려하였다. 앙코르 펠로우십 가입자격조건은 55세 이상 은퇴자로서 처음 설립시에는 재무, 마케팅, IT등의 분야에서 쌓아올린 은퇴자들의 전문 능력을 활용하여 조직운영에 도움을 받다가, 차츰 누구나 할 수 있는 초등생 대상 읽기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어 갔다.

앙코르 펠로우십 활동내역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평화봉사단 (Peace Corps)프로그램이 청년들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하여 교육, 기술 분야를 가르치듯이 시빅벤처스에서 시니어들을 경험봉사단(Experience Corps)으로 조직하여 초등학교 교육분야에 투입하는 것이다.

투입된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은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대도시 낙후된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책 읽기나 숙제를 돕는 학습지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YMCA 방과후 활동에 동행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습 능력이 크게 좋아졌다고 한다.

지금은 경험봉사단(Experience Corps)이 단독 비영리 조직으로 시빅 벤처스에서 독립하여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YMCA 청소년들과 협력하여 19개 도시에서 약2,000여명의 은퇴자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비영리기관의 직원으로서 일하는 은퇴자들은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급여를 받기도 하고, 경험봉사단(Experience Corps)은 적정한 living allowance를 받기도 한다.

<그림 1-23> 앙코르 펠로우십 활동자를 위한 목적상 소개 화면 및 프로그램 진행화면



이들은 4,000만명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퇴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에 가입하여 시니어들을 위한 봉

사활동 플랫폼(CreateTheGood.org)를 런칭하여 미국의 모든 노인들이 자신의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봉사활동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고 자신의 봉사경험과 이야기를 회원들과 공유하면서 노년을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의미 있게 보내고 있다.

이들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마크 프리드먼(Marc Freedman)은 앙코르 펠로우십 활동자들을 위해 ‘목적상(Purpose Prize)’을 만들었는데 시빅 벤처스가 주관하고, 애틀랜틱 자선재단(The Atlantic Philanthropies), 존 템플턴 재단(The John Templeton Foundation)의 후원으로 2006년부터 매년 60세 이상 시니어 활동가를 대상으로 5명에게 10만달러의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2007년 수상자 유진 존스(H. Eugene Jones)는 “Opening Minds through the Arts”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그의 나이 84세에 만들어서 처음에는 3개 학교에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36개 학교 650명 교사 참여, 17,0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Opening Minds through the Arts” 내용은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년 당 요구되는 학업 성취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학생당 흥미를 보이는 분야를 봉사자가 탐색하여 예술 분야와 접목하여 방과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임. 예를 들어 창의력이 있는 아이에게는 작곡 전문지식이 있는 봉사자가 창의력을 이끌어내도록 지도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방과후 YMCA체육 수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아래는 2007년 목적상 수상자 유진 존스(H. Eugene Jones)의 수상 소감이다.

- ▶ “우리는 이 지구가 존재했던 수십억년을 기다린 후에야 그 역사에 비했을 때 10억분의 1초 정도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란 짧은 무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귀중한 순간을 낭비하는 건 상상하기도 힘드네요”

(You sit on a shelf waiting for the billions of years that this earth has been in existence, and you have your turn on stage for a nonosecond. To waste it by doing nothing is unthinkable)

참고자료 : encore.org

○ 우리시의 시사점

은퇴가 인생의 주요 무대와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타인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봉사공간을 회사 차원에서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비영리기관으로 발전하도록 하면 은퇴가 가까운 직원들은 자원봉사에 접근하기 용이할 것이다. 양코르 펠로우십은 프로그램의 장점은 (Peace Corps)과 똑같이 조직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책임어주기로 은퇴자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은 육아에 대한 심적 부담이 줄이는 사회가 될 것이다.

Ⅲ. 결론

이상으로 서울시민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서울시민들이 현재 하고 있는 생각이 장래 그들의 요구가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우리보다 앞서고령화 사회를 겪은 미국의 시행중인 정책과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사회적 여건상, 여러 이유등으로 바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가까운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UBRC의 경우 커뮤니티 주민들과 대학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후 오랜 기간을 두고 설립 및 발전되기 때문에 운영중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멤버 스스로에 의해 조정되어 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정되어 가는 이상적인 ‘익숙한 곳에서의 노화’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AAA(노인복지사무소), AARP(은퇴자협회) 등 통합된 시스템에 의해 의사소통의 공간을 열어둔 것도 선진국의 좋은 사례일 것이다.

가족간병인(돌봄)지원서비스(Family Caregiver Service)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가족이 가까이 사는 이웃과 이야기가 되어 적절한 비용을 받아가며 치매 어르신과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도 우리나라와 전적으로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병원 접근성이 우리나라보다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연금제도에 있어서만은 우리도 지속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에 근거한 대상자 확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50개주를 대상으로 여러 이해관계 등에 근거하여 미국도 여러 번의 법 개정을 거친 것으로 상당한 진통의 시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젊어서 30년을 일했어도 일시불의 퇴직금 지급 이후 다시 현장으로 내몰리는 노년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54세부터 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연금제도는 우리가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양코르 펠로우 쉽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울시 회사차원에서 고려해보았으면 한다. 평화봉사단처럼 체계적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이 탄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민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갔으면 한다.